

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(안) 제안설명서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·폐하고자 할때는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
-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 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
- 내무부 진홍 13240-268('94. 9. 7)로 시달된 준칙을 참고, 우리시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의결을 요청함.

2. 주요골자

-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·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. (제3조)
-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·법인·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. (제4조)
- 공중화장실에 필수적·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. (제5조, 제6조, 제10조)
-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·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함. (제12조)
- 시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·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·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. (제14조, 제15조)
- 일정 시설기준·전담관리인 배치·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장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. (제16조)
-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. (제18조)